

## 우수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

제정 1991. 5. 3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우수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대학 우수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라 함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과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과학 및 공학연구센터(SRC, ERC)를 말한다.

제3조(소장) ① 연구센터에는 소장을 두며,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소장이 임기 만료전 퇴임한 경우 신임 소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연구센터는 총장 소속하에 두며,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
② 연구센터에는 부, 실 등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원, 보조연구원, 행정 및 기술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에 준하는 교내외 인사 중에서,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요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연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수립, 연구방향의 설정, 주요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, 예산, 결산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7조(예산의 편성과 운용) ① 연구센터의 예산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편성 운용한다.

②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 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 운용한다.

제8조(대학의 관리 및 지원) ① 본 대학에서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따른 간접경비(Overhead)를 일정비율 징수할 수 있으며, 그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대학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운영이나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.

제9조(회계관리) ① 한국과학재단과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본 대학에서 관리하되 일반 연구프로젝트 연구비와는 별도로 회계관리한다.

- ② 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소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.
- ③ 연구센터의 경비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정한 기준(집행내용 및 금액한도) 범위내에서 집행하며, 대학의 일반 연구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제규정과 지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연구센터는 참여연구인원의 소요경비 지급등을 위하여 전도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각 연구센터별로 관리한다.
- ⑤ 소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⑥ 본 대학은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조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산관리) 연구센터의 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대학의 자산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에서는 자산목록을 구비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센터에서 구입한 장비 등을 참여연구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제11조(세칙)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